

보도	2026.6.29.(월) 조간	배포	2026.6.26.(금)	
담당부서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보호감독총괄팀	책임자	선임국장	노영후 (02-3145-5700)
		담당자	팀장	황기현 (02-3145-5680)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추진 과제】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 실현을 위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개최

※ 위원회의 주요 자문 및 검토의견은 추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I 개요

- 금융감독원은 '26.6.25.(목) 14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감독·검사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26.3.6. 출범)

-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차입 주식매수 동향 점검, GA發 금융질서 문란행위 대응 등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6개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 위원회는 개별 현안에 대한 단순 의견청취를 넘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할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음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6.6.25.(목), 14시, 금융감독원 본원 11층 대회의실
- ☑ **참석자**
 - 내부위원(6명) : 금감원장(위원장), 부원장(4인), 소비자보호 총괄 부원장보
 - 외부위원(10명) :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금융업계, 언론 등 전문위원
- ☑ **주요 논의내용**
 - **(투자자 보호)** 최근 차입 주식매수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과 함께 생애주기별 금융투자 교육 강화 방안 논의
 - **(금융질서 확립)** GA發 금융질서 문란행위 방지, PG사 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 등 금융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감독·제도개선 방향 논의
 -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소비자 정보 전달체계 개선, 요구불예금 조건부 우대금리, 미해지 체크카드, 퇴직연금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개선 등 논의

II 제3차 회의 안건 주요내용 ※ 안건 세부 내용은 [붙임] 참고

안건1 최근 차입 주식매수(빚투) 관련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 **(논의배경)** 최근 증시 상승과 함께 투자자의 주식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주식 매수를 위한 직·간접 차입자금과 레버리지 투자상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 '26.5월말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38.0조원으로 '25년 이후 크게 확대되었고, 증권담보대출도 26.3조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 다만, 시가총액·예탁금 대비 비중은 과거와 비교할 때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
 - 레버리지 ETF와 지수선물·옵션 거래도 증가하고 있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투자자 손실 확대 및 금융회사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
- **(대응방안)** 차입투자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지속 안내하는 한편,
 - 리스크가 확대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과도한 차입투자 확산을 사전 방지할 예정

안건2 자본시장·금융투자 분야 금융교육 강화방안

- **(논의배경)**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과도한 차입투자 등 소비자의 손실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 소비자가 상품구조와 손실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금융투자교육'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 **(대응방안)** 아동·청소년, 청년, 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금융투자교육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

- [아동·청소년]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관련 온라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교육부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FSS 투자탐험대'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
 - 또한, 1사1교 금융교육 강의교안에 자본시장·금융투자 내용을 보장하고,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유관기관의 참여를 확대
- [청년] 군장병·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대학 실용금융강좌에 금융투자 관련 내용을 확충
- [시니어] '고령층 집중 금융교육 기간'을 운영하고, 'FSS 시니어 금융아카데미'를 개편하여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 실시

안건3 GA發 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응방안

- (논의배경) 보험회사의 GA 판매 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GA의 부실 내부통제로 인한 부당 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불법 私금융 가담 등 질서 문란 행위도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 GA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업무범위, 영업행위 제재, 보상체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음
- (대응방안) GA가 판매채널로서의 자율·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갖추도록 시장규율과 제재를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유인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선을 병행하기로 하였음
 - [업무범위 조정] GA의 겸영금지 업무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 오인*이 야기되지 않도록 개선**

* GA가 각종 컨설팅, 법정 의무교육 대행 등을 빙자하여 소비자에게 접근한 후 고가(高價)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거나, 위법행위를 조장

** <현행 겸영금지> 다단계판매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추가 겸영금지(예시)> ①세무, 회계, 노무, 정책자금 지원 등에 관한 경영컨설팅 및 법정 의무교육 대행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업무, ② GA의 본연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크거나 소비자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큰 업무

- [제재 강화]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이관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GA 임직원 에 대해서도 '퇴직자 상당 통보제도'를 준용
- [영업행위 규율 강화] GA가 보험계약자 등의 위법행위를 교사·방조·관여 하는 경우 제재근거를 검토·마련하고, 특별이익 제공대상을 명확화*
 - *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제공, 통상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 제공 등
- [보상체계 정비] GA의 수수료 중심 과당경쟁 방지 등을 위해 마련된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방안'(26.7월 시행)을 차질 없이 이행

안건4 PG사 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 (논의배경) 온라인 상거래 확산 등으로 카드사와 복수의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PG)가 결제에 참여하는 n차 PG 구조가 확대되고,
 - 일부 하위 PG의 부실·불법행위가 이용자·가맹점의 대규모 피해 사례로 이어져 PG사의 결제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대응방안) 상위 PG사의 하위 PG사에 대한 결제 리스크 관리 의무를 제도화*하여 지급결제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예정
 - * 가이드라인(행정지도) 시행('26.1.5.) 등을 거쳐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추진
 - [결제리스크 평가] 전금업자가 하위 PG사와 계약 체결·갱신시 결제 리스크를 평가하고, 계약기간 중에도 주기적 점검을 의무화*
 - *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체결·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기간 중에도 리스크 수준에 따라 시정요구, 계약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
 - [기록관리 등] 평가·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유지하고, 리스크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수 있도록 조치근거 마련

안건5 SNS 등 채널 다변화를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 체계 개선방안

※ '26.6월 5주차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① 은행권의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부 우대금리 제공

- 은행권의 저원가성 예금 유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출 우대금리 항목에 요구불예금 평잔 유지 조건을 도입하려는 사례가 증가
- 이에 소비자 보호와 은행의 자율적 경영 판단 측면에서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부 우대금리 제공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후속방안을 마련할 예정

② 중소기업권의 예금계좌 해지 시 연계 체크카드의 해지 절차 강화 방안

- 결제 예금계좌가 해지된 체크카드는 소액신용 결제 및 본인인증 기능이 여전히 유효하여 의도치 않은 소액연체 및 본인인증 악용 등 잠재적 위험이 있음
- 이에 중소기업권에서 예금계좌 해지 시 체크카드도 함께 해지되도록 전산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미해지 카드로 결제시 SMS를 통해 해지 안내를 실시할 계획

③ 퇴직연금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 포함 추진

-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보험,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 퇴직연금(DB, DC)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회사 단위로 계약·관리하고 있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이에 퇴직연금 사업자의 시스템을 개편하여 회사(사용자) 및 가입자 단위로 관리체계를 이원화하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에 퇴직연금을 포함할 예정

III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일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금융감독·검사 업무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관행적 요인을 지속 발굴·개선하는 등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
 - 아울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주요 자문의견 및 검토의견은 추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게시할 예정

참고1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외부위원 현황

구 분	성명 및 직함	소 속
소비자·시민단체	문미란 회장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김종보 소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정운영 이사장	금융과행복네트워크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지속가능경제학과 대우교수
	이정민 연구위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학계	김우찬 교수 * 부위원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제개혁연대(소장)
	표창원 특임교수	한림대학교 융학과학수사학과 표창원 범죄과학 연구소(대표)
	강병훈 교수	카이스트 정보학부 정보보호대학원
	김현수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금융업계	정상혁 은행장	신한은행
	배재규 대표이사	한국투자신탁운용
	구본욱 대표이사	KB손해보험
언론	이영태 논설위원	한국일보

참고2

안건 담당부서

안건명	부서 및 팀	책임자 및 담당자	
1. 최근 차입 주식매수(빚투) 관련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자본시장감독국 증권거래감독팀	책임자	국 장 박시문 (02-3145-7580)
		담당자	팀 장 박세혁 (02-3145-7590)
2. 자본시장·금융투자 분야 금융교육 강화방안	금융교육국 금융교육기획팀	책임자	국 장 문재희 (02-3145-5971)
		담당자	팀 장 허수정 (02-3145-5972)
3. GA發 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응방안	보험감독국 보험총괄팀	책임자	국 장 이권홍 (02-3145-7460)
		담당자	팀 장 유명신 (02-3145-7450)
4. PG사 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전자금융감독국 전자금융총괄팀	책임자	국 장 변재은 (02-3145-8780)
		담당자	팀 장 조강훈 (02-3145-8782)
5. SNS 등 채널 다변화를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 체계 개선방안*	소비자소통국 소비자소통기획팀	책임자	선임국장 박현섭 (02-3145-5530)
		담당자	팀 장 우정민 (02-3145-5510)
6 -① 은행권의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부 우대금리 제공	은행감독국 은행제도팀	책임자	국 장 정은정 (02-3145-8020)
		담당자	팀 장 송명준 (02-3145-8030)
6 -② 중소기업권의 예금계좌 해지 시 연계 체크카드의 해지 절차 강화 방안	중소금융감독국 중소금융소비자보호팀	책임자	국 장 이건필 (02-3145-6770)
		담당자	팀 장 김수진 (02-3145-6775)
6 -③ 퇴직연금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 포함 추진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	책임자	국 장 김기복 (02-3145-5180)
		담당자	팀 장 황찬홍 (02-3145-5190)

* 5번 안건은 '26.6월 5주차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